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외장
람	

제1485호 2020. 1. 1(수)

차 례

훈 령

-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
일부개정 규정 ----- 1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

2020년 1월 1일

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52호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제2조 제1호”를 “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2조 제2호”를 “제2조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, “의해 상근하는”을 “따라 상근(常勤)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사용계획서를 사용전 회계연도 9월말까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, 예산편성상의”를 “채용계획서를 사용 전

회계연도 9월 말까지 관리부서, 예산부서 및 인사부서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 제2항 제1호”를 “제3조제2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요”를 “필요”로, 같은 항 제2호 중 “근로자를 말한다.”를 “근로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의료급여관리사”를 “의료급여관리사, 사례관리사, GIS DB 관리,”로, “인력을 말한다.”를 “근로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청사내”를 “청사 내”로, “근로자를 말한다.”를 “근로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의해”를 “따라”로, “근로자를 말한다.”를 “근로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제1호”를 “제1항제1호”로, “책임을 요하는”을 “책임이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제1항 제1호”를 “제1항제1호”로, “관리부서”를 “관리부서와 인사부서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용부서의 장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(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)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 중 “7월말”을 “7월 말”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삭감 하여야”를 “삭감하여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사용자”를 “사용부서”로, “사전에”를 “미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적격자를”을 “자격에 적합한 사람”로, “사전에”를 “미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”을 “필기시험, 실기시험,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방법으로 자격에 적합한 사람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, 실기시험,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채용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

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9.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제11조제1항 중 “자를 선정”을 “사람을 선정”으로, “신원조사 및 신원조회”를 “결격사유조회 및 신원조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자”를 “사용부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등·초본”을 “초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.

3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제12조 본문 중 “종료한”을 “마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통보하여야”를 각각 “알려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단서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사용자”를 “사용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, “사용자”를 “사용부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, “사용자”를 “사용부서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부득이”를 “필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면허를 요하는”을 “면허가 필요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소속기관내”를 “소속

기관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새로이”를 “새로”로 한다.

제20조 제5호 중 “정수감축”을 “정수 감축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본문 중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본문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2조의2 본문 중 “사용자는”을 “사용부서의 장은”으로,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, “가산하여”를 “가산(加算)하여”로 한다.

제23조 중 “사용자는”을 “사용부서의 장은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사용자는”을 “사용부서의 장은”으로 한다.

제26조 중 “규정이외”를 “규정 이외”로, “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”를 “공무직 단체·임금협약 및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·규칙심의회결정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5호, 제6호,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2】

공무직근로자 정수표 (제8조제2항 관련)

구	분	수행기능별 내역	정 원	비고(부서명)
총 계			202	
단순노무원	계		20	
	시설물·장비 유지관리 인부 (시설관리)	소 계	7	
		문서마이크로편집요원	2	민원봉사과
		공영주차장관리원	1	주차관리과
		계측기관리원	1	도시기반과
	현장공사·작업 등 현업인부 (현업종사)	녹지관리인부	3	공원녹지과
		소 계	5	
		재활용수집·선별원	2	자원순환과
	현장지도단속· 감시현장인부 (지도단속)	하수도준설원	3	생태하천과
		소 계	3	
		자동차배기가스단속원	1	클린도시과
	단순잡역조무인부 (단순조무)	개발제한구역단속원	1	도시개발과
광고물철거인부		1	도시재생경관과	
소 계		5		
행정보조원	비서실, 부속실 등 내방민원 안내요원	3	총무과	
		2	의회사무국	
	계		17	
	통합사례관리사	4	복지정책과	
	의료급여관리사	2	장애인복지과	
	아동통합사례관리사	5	아동행복과	
	환경개선부담금체납정리요원	1	환경관리과	
	GIS 데이터베이스갱신요원	1	생태하천과	
	도로굴착감리원	1	도시기반과	
	예방접종사업인부	1	건강증진과	
건강생활실천사업	1	건강증진과		
물리치료사	1	지역보건과		
도로보수원		5	도시기반과	
환경미화원		139	자원순환과	
청원경찰	계		21	
	경비청원경찰	20	총무과	
	경비청원경찰	1	보건소	

(근로자) 주 소 :
연 락 처 :
성 명 : (서명)

【별지 제10호 서식】

신분증 (제15조 관련)

【공무직근로자】



【기간제근로자】

(전면)

(후면)

